

제418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11월 26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6)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8)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5)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7)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3)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5)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0)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8)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1)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8)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8)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4)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9)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5)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9)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9)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9)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9)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8)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2)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32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6)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8)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3)

-
-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7)
 -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9)
 - 3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9)
 - 3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8)
 - 33.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0)
 - 34.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4)
-

상정된 안건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4) 3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6) 3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8) 3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5) 3
- 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7) 3
- 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3) 3
- 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5) 3
- 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0) 3
- 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8) 3
- 1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1) 3
- 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8) 3
- 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8) 3
- 1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4) 3
- 1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9) 3
- 1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5) 3
- 1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9) 3
- 1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9) 3
- 1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9) 3
- 1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9) 3
-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8) 3
-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2) 3
-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0) 3
-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324) 18
- 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0) ... 18
- 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6) ... 18
- 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8) ... 18
-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7) ... 18
- 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3) ... 18
-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7) ... 18
-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9) ... 18
- 3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9) 18

-
3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8) 24
33.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0) 24
34.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4) 24
-

(10시03분 개의)

○소위원장 조은희 의사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법률안과 어제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비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률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4)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6)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8)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5)
 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7)
 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3)
 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5)
 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0)
 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8)
 1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1)
 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8)
 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8)
 1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4)
 1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9)
 1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5)
 1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9)
 1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9)
 1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9)
 1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9)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28)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2)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0)

○소위원장 조은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허철훈 사무차장께서 출석 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허철훈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허철훈입니다.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하여 심사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위원장 조은희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는 전문위원이 보고하는 주제별로 끊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첫 번째,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2쪽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24일 소위에서 심사된 바 있는 안건입니다.

간략히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 등 공직선거 선거관리준비경비의 편성과 배정 시기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20대 대통령선거부터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일이 12월에서 3월로 변경됨에 따라서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관리경비는 선거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인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이 속하는 연도인 2021년에 배정해야 되는 그 배정 시기가 편성 시기보다 앞서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 보시면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경비의 예산 편성·배정 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조은희 전문위원님 보고 내용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허철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21년 5월에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소위원장 조은희 감사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조문상 이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 역시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2쪽을 보시면 이 안건 역시 지난 9월 24일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위헌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 2020년 3월 25일 공직선거법 개정 시에 공공기관 상근직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즉 공직선거법 86조 제1항입니다—대상에서도 같이 삭제하였던바, 유사한 취지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상근직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개정 의견을 23년 1월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만 86조 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대상에서도 2020년 3월 25일 개정한 것과 같이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감사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다음 안건을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입니다. 역시 소위 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전투표참관인 인원을 본투표의 투표참관인과 동일하게 최대 8인으로 규정하되 선정·신고한 인원 수가 8명을 넘을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추첨에 의해서 지정한 사람을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현행법은 본투표의 투표참관인 수를 8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사전투표소의 사전투표참관인 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선정·신고한 인원 수가 많은 경우 사전투표소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전투표의 사전투표참관인 수를 본투표 선거일의 투표참관인 수와 동일하게 최대 8명으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참관인의 좌석 확보 등 투표소의 운영적인 측면 및 선거비용 절감의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참관인 수당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이 됐고 특히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참여 정당이,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38개 정당이 참여를 했습니다. 사전투표참관인 수 제한이 없다 보니까 선정·신고한 참관인 수가 증가해서 사전투표 관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예산도 3배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참관인 수를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참관인 수도 8명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경종 위원** 기본적으로 사전투표참관인 규정을 두는 거에는 적극 찬성인데요. 지금 8명이라는 숫자 안에서 규정을 하다 보니 지난 선거 때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같이 양 거대 정당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그것은 사전투표참관인뿐만 아니고 투표참관인도 똑같이 발생한 현상이고요. 지금 선거법에서는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규정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8명으로 제한하게 되면 추첨을 했을 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경종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조문상** 의사일정 4항 윤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2쪽입니다.

개정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정사항은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전자발송 허용 관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 대신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문자 발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지 않을 경우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관할 선관위에 문자 발송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문자 발송 완료 후 선관위의 번호 폐기 의무를 규정하고 이동통신사업자의 의무행위에 관한 기준 조항 준용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면수 상한은 비전자 홍보물의 2배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종이 홍보물과 개정안의 전자 홍보물 간의 비교를 보시면 현행의 경우는 선거일 전 25일까지 세대주 명단에 대한 교부를 신청하고 선거일 전 16일까지 우편발송으로 홍보물을 발송합니다. 비용은 예비후보자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송 요청 신청기간과 문자 발송기간, 비용부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작되는 종이 홍보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을 막을 필요성과 개인별 전자 홍보물 발생 증가에 따른 유권자의 피로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현행법이 종이 홍보물의 발송 절차 및 비용부담 주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개정안은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또한 종이 홍보물의 발송대상이 세대주로 명확한 것에 비해서 전자 홍보물의 발송대상은 선거권자로서 해당 정보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발송 가능한 발송대상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2쪽입니다. 12쪽의 두 번째 개정사항을 보시면 선거벽보 첨부 매수의 축소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선거벽보의 첨부 매수를 현행보다 50%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온라인을 통한 정보 습득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선거벽보의 효용성이 과거와 달리 크게 감소한 점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1쪽입니다. 21쪽의 마지막, 전자선거공보의 허용 관련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전자적 발송 관련 사항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우편발송 대신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표 내용을 보시면 일단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 가능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는 선거권자 번호 제공을 요청받고 3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할 선관위는 번호 제공을 받고 2일 내에 문자로 발송하고 역시 전자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 이내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은 점자용 선거공보의 작성비용과 책자형 선거공보 및 전단형 선거공보의 발송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전자선거공보의 작성비용과 발송비용 모두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막을 필요성과 발송 증가에 따른 유권자의 피로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행법에서 선거공보의 비용 부담과 작성 면수가 선거공보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차이가 적정한지 그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선거공보의 발송대상이 세대주로 명확한 것에 비해서 전자선거공보물의 발송대상인 선거권자의 정보는 현재 이동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발송 가능한 발송대상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앞에서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후보자홍보물 전자발송 허용에 대한 의견인데요.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개정안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예비후보자홍보물 종이 홍보물은 예비후보자가 발송하고 예비후보자가 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전자 홍보물은 선관위가 발송을 하고 비용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선관위가 예산으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양자 간에 차이가 발생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부합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는 선거권자로 되어 있는데 선거인명부가 확정되지 않은 시기에 선관위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동전화번호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때 이동통신사업자도 그렇고 선관위도 그렇고 선거권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거권자 정보를 요청하는 그런 어떤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편발송하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전체 면수의 50% 이상을 선거공약과 추진계획으로 게재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전자 발송하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이러한 제한 규정이 없어서 형태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울러 여기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번호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동통신사업자에는 알뜰폰 업체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동통신사업자 의견도 충분히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두 번째, 세 번째 것도 일단은 다 들어 보지요. 정부 측 의견을 다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번·다 번.

○**소위원장 조은희** 다른 것들도 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 한꺼번에 다 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 허철훈** 그러면 두 번째, 선거벽보 첨부 매수 축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첨부 매수를 축소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세 번째, 전자선거공보 혜용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만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개정안에 있는 선거권자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거법 3조에서 선거인을 정의할 때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선거법 156조에서는 선거인명부에 오르지 않은 자는 투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한테 전자선거공보가 발송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지금 휴대폰 가입자 수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전체 가입자 수는 5680만 명입니다. 이통3사가 4750만 명이고 알뜰폰업체 57개에 가입한 사람이 93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수를 5200만 명 정도로 볼 때 480만 명 이상이 중복가입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이통3사와 알뜰폰업체가 요청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동전화 번호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저희가 SKT, KT, LG의 의견을 조회했습니다만 SKT로부터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3일 안에 이동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KT와 LG는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의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통3사와 알뜰폰업체가 제공하는 정보, 이동전화번호가 과연 정확한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확정된 사람과 정확하게 매칭되는

이동전화번호를 선관위에 제공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동전화번호에 따라서 문자를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통사 가입할 때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 또 타인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선거인에 매칭되는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의 형평성 문제인데요. 책자형 선거공보를 받는 사람은 선거일 전 10일까지 발송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자로 발송하는 경우는 선거일 전 7일까지 발송하도록 되어 있고 또 휴대폰이 없는 사람한테는 전자선거공보를 별도로 인쇄해서 우편 발송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선거일 전 7일까지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 측면에서 3일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앞두고 알권리 측면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휴대폰에 해당되지만 피처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한 91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91만 명의 경우에는 전자선거공보를 발송해도 열람을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처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규정으로 볼 때 지금 적용을 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동통신사와 알뜰폰업체에서 선관위에 제공하는 전화번호는 휴대전화 가상번호가 아니라 이동전화번호입니다. 지금처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진 그런 상황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전환하지 않고 이동전화번호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조은희** 예.

○**정동만 위원** 이 선거공보물, 종이 홍보물로 인해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개정안 보니까 전자와 비전자 홍보물 차이를 너무 지나치게 크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공보물 면수를 두 배 차이 나게 하는 것은 전자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 대해서 선거정보를 더 적게 전달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무차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예.

○**정동만 위원** 예비후보자 보면 통상 후보자의 3배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예비후보자 모두 전자 홍보물 발송한다고 하면 행정적·재정적 소요가 클 텐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지금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전자 홍보물로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 부분은 지금 명확히 규정이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마 보낼 때 한 건당 30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정동만 위원** 그래서 준비가 아직, 입법이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할 수가 없고.

통신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벽보의 효율성이 감소한 것은 맞지만 벽보가 중요성이 줄어

들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면 벽보가 인구 500명에 한 장을 붙입니까, 1000명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지금 현행은 동은 500명당 한 매를 붙이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예.

○**정동만 위원** 그렇게 붙이는데 인구감소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벽보를 줄인다면 인구 밀집도가 낮은 지역주민들 벽보 하나 보지 못하고 선거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벽보를 게시하거나 공보물 보내는 이유가 유권자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집집마다 공보물 보내도 안 보는 유권자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꼭 환경적 문제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알권리를 만족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라는 중요한 가치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은 상당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예.

○**정동만 위원** 온라인을 통한 정보 습득이 일상화되었다, 매우 축소는 타당하다는 선관위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러면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위원님 말씀처럼 인구감소지역 같은 경우에는 선거벽보 첨부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구가 밀집한 동 단위 같은 경우에 현행대로 붙이게 되면 첨부 매수가 과다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 또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측면도 같이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정동만 위원** 선관위의 가장 큰 책임이 국민 모두가 참정권이 반드시 보장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예.

○**정동만 위원** 그래서 특정 계층을 염두에 두지 않는 이런 법을 동의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검토의견이 정확하게 된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예, 맞습니다.

○**정동만 위원** 맞다면서 동의를 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김종양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으니까 먼저 하시고 용혜인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일단 저도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기준 개정의 필요성, 그 기준이 자원 낭비, 환경오염을 내세운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법 관련해서는 우리 유권자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에 가장 우선적 가치를 둬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전자선거공보, 즉 여기서 지금 전자선거공보 허용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선택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우편 발송하지 않는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김종양 위원** 않는 경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예.

○**용혜인 위원** 우편발송, 그러니까 전자로 보내면 우편은 발송 못 하는 겁니다.

○**김상욱 위원** 우편 발송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

○**용혜인 위원**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김종양 위원** 그러면 그게 쉽게 되나요? 후보자마다 그렇게 선택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위원 조문상** 후보자별로……

○**김종양 위원** 후보자별로?

○**전문위원 조문상** 예.

○**김종양 위원** 하여튼 선거법 개정의 가장 우선적 가치를 갖다가 전 유권자, 그렇지요? 하여튼 인터넷에 익숙한 그런 유권자뿐만 아니라 좀 서툰 그런 사람들한테도 올바른 정보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기준이 돼야 되고 또 정동만 위원께서 이야기 잘하셨는데 선거벽보 관련해서 물론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지역, 아파트나 이런 데는 500명 단위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사실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선거벽보의 첨부 기준, 인구 기준을 오히려 낮추든지, 그런 추세를 감안해 가지고, 아니면 현행대로 하는 게 맞지. 동하고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지역, 동 단위,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시 단위 지역하고 읍면동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반씩, 배씩 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비후보자홍보물 전자발송 허용, 현재도 지금 예비후보자들 8회에 걸쳐 가지고 여러 가지, 8회인가 해 가지고 지금 홍보물을 갖다가 보낼 수 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예, 예비후보자 등록하고 나서 예비후보자홍보물 보낼 수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예비후보자 등록하고 나면 우리가 보낼 수 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예, 종이 홍보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뭔 차이가 나지요? 전자발송 허용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럽니까, 지금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전자발송 허용 이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조문상** 비용 부담 부분도 누가 부담할지도 규정이 명확지 않고……

○**김종양 위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여덟 번에 걸쳐 가지고 유권자 상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지요?

○**전문위원 조문상** 보완할 부분이 많다는……

○**용혜인 위원** 그거랑 좀 다른데요. 말씀하시는 문자메시지는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연락처들에 발송하는 거고……

○**김종양 위원** 연락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다, 그렇지요?

○**용혜인 위원** 예, 이것은 연락처를 우리가 선관위 공보, 예비후보자홍보물 우편으로 보낼 때 주소 받아서 하잖아요. 그것처럼 전화번호를 받아서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김종양 위원** 하여튼 이것은 전화번호를 공정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면 한번 고민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제 생각은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금 더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냐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용혜인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용혜인 위원** 저는 공보물에 대한 전자발송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이랑 의견이 비슷하고요. 특히나 전자정보에 대한 접근이 취약한 계층들의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좀 배제가 될 수 있다. 특히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완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좀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예비후보자홍보물 같은 경우는 아까 선관위 입장 들어 보니까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SKT도 그렇고.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용혜인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선거벽보, 그러니까 포스터 붙이는 매수의 축소는 저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2023년에 선관위가 이미 5000명에 한 장으로 의견 제시를 했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예, 개정의견을 냈습니다.

○**용혜인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이 개정안은 그것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개정안인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우선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동 단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김종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려를 하셔서……

○**소위원장 조은희** 정동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죄송합니다. 정동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감안하면 인구감소지역은 또 특별히 조정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혜인 위원** 그러면 동 단위에서는 기준을 좀 더 올리고 읍면 같은 경우는 현행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저는 사실 공보물은 내용,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선거벽보에 대한 내용은 그런 부분은 아니어서, 사실 우리가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이 걸려 있고 늘 선거벽보 훼손에 대한 문제들도 발생하는데 최소한 동 단위에서는 2023년에 선관위가 제시했던 기준까지는 좀 올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식 위원** 지금 위원님께서 대체적인 걸 보면 가·나·다항에 대해서 거의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소수의견으로, 지금 저희 선거법이 지나치게 규제를 많이 한다 이런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예,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이상식 위원** 그렇지요? 외국에 비해서는 훨씬 저희들이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까지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예.

○**이상식 위원** 거기다가 또 두 번째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IT 기술 발전으로 인한 전자적인 그런 매체를 좀 활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데, 지금 계속 개정 의견이 나오고 하는데도 이걸 손을 봐 가지고 좀 문제점을 개선해서 고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부 다, 현실적인 문제점은 어느 조항이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가급적이면 전향적인 태도로 우리가 검토를 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나, 선거벽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선거운동 실제로 다 해 본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벽보를 보고 특정한 후보자에 대한 어떤 결심을 하거나 정보를 파악하거나 하는 이런 경우는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주로 구전, 시골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못 보면 간접적으로 전달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구전을 해서 정보를 죽취득하고 또 시내의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전자매체를 이용해 가지고 SNS를 통해 하고 하는데…….

저는 가, 나, 다 중에서 나 정도는 용혜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내의 인구가 많은 분야에서는 좀 축소를 하고 인구가 희박한 지역, 노령인구가 주로 계시는 지역은 조금 유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혜인 위원** 사실 동 단위는 현수막도 굉장히 밀집해서 붙어 있기 때문에 정보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공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김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욱 위원** 본 건에 대해서 의견이 다 다양하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짧게 말씀을 올리면, 저도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문자, 전자발송에 관해서는 사실 원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개정해 나가야 하는데 선관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인 관리 가능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통신사에게 모든 것을 의존해서 정보를 취득할 수밖에 없는 데 거기서 정보의 오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한 사람이 여러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소위 말하는 대포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선거 오염에 관한, 선거라는 것이 작은 것 하나로도 큰 영향을 미치고 많은 오염들이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깨끗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공정선거에 문제가 생겨서 이 부분은 지금 방향성은 맞지만 충분한 관리 준비가 되지 않고서 했다가는 자칫하면 불공정선거의 이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반대하고요.

하지만 선거벽보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자원을 아끼고 또 대부분이 정보를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를 하는데 저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권자들의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이 가면 갈수록 선거에 참여하거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또한 이제 벽보 외에는 정보를 취득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분들도 또 제법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예 정치에 무관심한 세대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다소간에 자원이 좀 소진된다 하더라도 우리 유권자들이 선거에 좀 더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어떤 후보들이 출마했는지 확인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핸드폰이 됐든 다른 자료를 통해서 그 후보자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벽보 부분은 저는 줄이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를 했으면 하는 의견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모경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모경종 위원** 중선관위에 계신 모든 분들도 재난문자 받아 보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예.

○**모경종 위원** 하루에도 몇 번씩 받으실 수도 있고. 그런데 아까 통신사 관련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재난문자 같은 경우와 좀 연관시켜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선거야말로, 제가 지금 당장 네이버에만 쳐 봐도 경남 창원 의창의 도로 통제하는 내용도 좀 전에 재난문자가 나가 있어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런 선거벽보, 선거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예.

○**모경종 위원**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다음에는 이해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해식 위원** 저도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비홍보물을 관련해 가지고, 예비홍보물은 유권자 수의 10분의 1 범위에서 발송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지금 현재 종이 홍보물은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발송하도록……

○**이해식 위원**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허철훈** 예.

○**이해식 위원** 세대수군요, 세대수의 10분의 1.

지난 선거 때 저는 사실 예비홍보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않고, 그 이유는 사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특별히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정동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추세가 종이 홍보물을 잘 안 보고 그래서 보내지 않고 온라인 광고에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보내는 비용을 활용했거든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런 후보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변화하는 통신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변화된 방법의 선거운동을 하는 셈인데 저는 제도적으로도 조금 쫓아갈 필요는 있다, 선거인의 정보를 우리가 완벽하게 관리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사실 종이 홍보물을 보내지 않고 이런 전자

홍보물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알리는 것은 여러모로 효용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어떤 한계 내에서도 예비홍보물은 어차피 이게 비용을 후보자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 홍보물에도 좀 적용을 해 가지고 다소 선거인……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핸드폰 전화번호가 모두 선거인하고 일치된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 허철훈**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사실 통신사에다가 안심번호 요청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 허철훈** 예.

○**이해식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오차 정도를 우리가 감안하고 받아들이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비후보홍보물에 있어서도 전 유권자들한테 다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대수의 10분의 1만 보낼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전자 홍보물 같은 경우도 예비후보홍보물은 후보자가 선택을 해서, 예를 들면 세대수의 한 30% 정도의 숫자 정도만 보낼 수 있게, 그리고 나중에 명부를 활용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그것을 통신사에다가 요청하고 문자로 보내 주고 거기에 발생되는 비용, 그러니까 하나 보내는 데 30원 정도 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드는 비용은 후보자가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열어 주면 상당히 많은, 그리고 그 숫자 자체도 30% 이내에서 가능하게 해 가지고 30% 다 할 수도 있고 20%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열어 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셨어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 허철훈**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만 검토를 해서는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해식 위원** 통신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 허철훈** 이동통신사, 알뜰폰 업체 다 같이 의견도 나누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식 위원** 알뜰폰 그리고 아까 얘기한 피처폰…… 피처폰은 근본적으로 좀 불가능한 분들일 거고,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 허철훈**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좀 감안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만 적어도 예비후보홍보물이라는 게 모든 선거인들한테 전체 다 보내는 그런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일정 부분에 대한 유권자들에게만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오차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전자 홍보물을 일정 규모의 이동통신 가입자들한테 보내주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채현일 위원님.

○**채현일 위원** 선관위 쪽에 제가 궁금한 게요. 지금 선거 과정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정보에 대한 취득, 그것 하는 게 주로 어디서 많이 한다고 연구 결과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선진 사례나 이런 것?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 허철훈**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많이……

○ **채현일 위원** 아니, 그것 개인적인 생각 말고요. 용역 한 결과가 있나 이거예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 허철훈** 저희가 선거 끝나고 나면 유권자 의식조사 하게 되는데요. 유권자 의식조사 하게 되면 온라인에서 많이 얻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채현일 위원** 저는 선거벽보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생각입니다. 아까 김상욱 위원님 의견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데요.

일단 저도 선거를 몇 차례 치러 봤지만 선거벽보가 갖는 상징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거공보를 받는다 하지만 거의 그것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있을지도 만무하고요. 그리고 온라인상의 그 수많은 문자 홍수와 SNS 하지만 소위 가짜뉴스, 어떤 기준점이나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없다는 점도 많고요.

정보의 홍수에서 뭔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가진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러한 기준의 가장 기준이 선관위 홈페이지 그리고 선거공보 등이 있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지나가면서 선거벽보를 보면서, 이걸 한번 잠깐 본다거나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사람들, 누가 출마했는지 그 이미지 이 자체가 가뜩이나 선거에 대한 무관심 그런 것을 좀 깨트리면서 어떤 선거에 대한 독려라는 캠페인 역할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벽보가 갖는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이게 예전에 스마트폰이나 또 온라인이나 이런 게 없을 당시에는 선거벽보 그런 게 상당히 중요했지만 그때보다 좀 완화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야지만 이 부분을 좀, 아까 여기 개정안이나 또 아까 선관위 5000명 기준 이것은 좀 과하지 않나, 제가 보면 제 지역구에—20만 명인데요—그것 한 30곳 정도를 둔다고 생각한다면 각 동에—9개 동이잖아요—서너 개밖에 달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도 동의 서너 군데에 선거벽보를 둔다, 과연 그게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제가 우리 지역구에, 우리 동료 의원분들이 지역구 관리를 하지만 선거운동 구민들한테 가장 효과가 큰 게 현수막입니다, 비용도 많이 들지만. 왜 그러냐면 문자도 보내고 SNS 하지만 현수막이 갖는 오프라인의 효과가 있듯이 선거벽보가 갖는 그런 효과 또 국민들의 알권리와 선거 참여 독려라는 그런 효과를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빠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인구 기준으로 했는데 이 인구 5000명당 1매 했는데 이것도 도시하고 농어촌하고 다른 것 같아요. 도시 같은 경우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형 아파트 해 가지고 밀집이 된 데가 있고요. 또는 상당히 주택가가 있고 또 아파트지만 중소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이것 인구 기준도 좋지만 밀집도 기준, 아마 분명히 선관위에서 내부적인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종합적인, 좀 입체적인 시각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선거벽보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이나 아니면 이것보다는 좀 더 완화되더라도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 **소위원장 조은희**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의견은 계속 심사를 하자는 결론을 정해

놓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선거는 기본적으로 유권자를 중심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출마자 중심의 사고가 대단히 많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가지고 하는 보완재적 시각은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예컨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면 단 1명의 유권자도 유권자로서의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가 된다면 그것은 그 유권자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주의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선거벽보는 그동안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 왔는데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선거벽보가 붙는 날로부터 선거가 시작됐다는 그 느낌을 갖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정보로부터 좀 익숙하지 못한 분들일수록 그런 어떤 외부적인 시선을 가지고 선거가 왔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온라인 홍보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완재적으로 같이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있으니까 시대에 따라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 있는 그런 문명의 발전 속도를 봤을 때 일단은 우리가 오늘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삭제하거나 하지 말고 계속심사로 좀 보류를 해 놓고 나머지 지금 문제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가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예, 위원님들 말씀 다 들었는데요. 지금 가향, 다향은 전문위원이나 또 정부 측 의견도 좀 신중한 입장이고 나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좀 첨예하게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건은 계속심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은 지구당 부활과 관련된 정당법……

○**이광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선거, 나머지 것들은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원장 조은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만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와 안건 심사 등에 대한 간사 간 협의가 계속 중입니다. 따라서 지구당 부활과 관련된 개정안은 금일 의사일정으로 안건을 상정하되 별도 논의를 하지는 않고 계속심사 안건으로 남겨 놓고자 합니다.

공청회 등 추후 심사 일정은 간사 간 협의를 좀 더 거친 후 공지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지금까지 논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19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저 잠깐만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조은희 예.

○이광희 위원 좀 여쭙고 싶은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찬성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행을 위해서라도 이게 저는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정당법을 개정하고자 했었던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라든가 위법 사항에 대한 문제들은 이미 10여 년 동안 오면서 굉장히 많이 복구가 돼 있고 이미 정치자금법이 굉장히 투명하게 진행이 돼서 이와 관련된 문제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봐서 제가 보기에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2소위에서……

○소위원장 조은희 예, 위원님 의견 잘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얘기가 좀 되면 지금 진행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위원장 조은희 다시 간사 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아니, 오늘 심사자료도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심사하는 것이……

○소위원장 조은희 안건만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광희 위원 안건만 올리기로 한 거예요? 이게 상정만 돼 가지고……

○소위원장 조은희 그다음에 공청회 절차 등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이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사무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이 정리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324)

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0)

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6)

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8)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7)

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3)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7)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9)

3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9)

(10시55분)

○소위원장 조은희 의사일정 제2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한경 본부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입니다.

정부의 재난안전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조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주요 법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안부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위원장 조은희** 감사합니다.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30항까지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는 주제별로 끊어서 보고해 주시고, 끊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기영** 자료 3페이지입니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근거 등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재난관리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과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 공유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개정안은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재난예방조치 의무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추가하고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 공유의 근거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제공 요청 대상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된 정보를 추가하고, 정보 요청 사유를 구체화하며 수집된 정보를 활용한 AI기반 학습·분석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연계 및 관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의 예방·대비 강화를 위해서 영상정보처리기기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동법에서 규정한 목적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은 범죄예방과 교통단속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 대응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서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신기술 적용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몇 가지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를 통합관제의 목적 범위 내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입법례에 따라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유사한 입법례로서 각주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통합관제센터 연계·관제 및 정보 제공 요청 대상에 정부안 등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달희 의원님 안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드론이나 바디캠 같은 것을 활용할 경우도 감안하여서 이달희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제공 요청 사유가 이달희 의원안에서 구체화되어 있는데요. 정보제공 요청이 필요한 상황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재정 확보방안 강구 의무와 관련해서는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이 임의사항으로 법 규정 형식이 되어 있음을 감안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AI기반 학습·분석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알고리즘 개발 등 다양하게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가항에 대한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정부 측 의견은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님.

○용혜인 위원 저도 큰 틀에서 동의하는데요. 74조의3 개정안 보시면 이달희 의원님 안인데 ‘현장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즉각적인 확인이 제한되는 등’이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행안부 입장은 어떤가요?

저는 사실 그냥 행안부가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전문위원 안보다도 그냥 현행 안이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위원회 말씀대로’가 아니고 다른 의견이시네요.

○용혜인 위원 현행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지요?

현재는 그냥 ‘현저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때’라고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예, 그렇지요.

○용혜인 위원 전문위원 안은 시행령으로 그것을 규정하자는 것이고 이달희 의원님 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행안부가 판단하면 되는 문제 같아서 이걸 굳이 시행령에 이렇게 다 나열하면 또 공백과 사각지대 같은 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된다 이런 생각인 거거든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일단은 지금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는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법 취지와 달리 임의로 이걸 판단해야 될 경우에는 조금 입법 목적 달성이 어려운 부분도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는 좀 더 구체화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용혜인 위원 전문위원 수정안 정도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예.

○**소위원장 조은희** 시행령으로,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정부 측은 원하시는 거지요? 제가 지금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용혜인 위원** 예, 그렇다고 답변한 겁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그런 거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예.

○**용혜인 위원** 전문위원 수정안.

○**소위원장 조은희** 또 딴 위원님 계십니까?

채현일 위원님.

○**채현일 위원** 지금 이 개정안 전에 현행법 체계하에서, 특히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아마 경찰청하고 연계를 했을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외에 행안부 안전본부나 그 전까지는 공유가 안 됐었나요, 이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점차 지금 확대돼 가고 있는 과정은 맞습니다. 그리고 경찰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구에 설치돼 있는 통합관제센터에 경찰 두 분 정도가 24시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러면 해외 모범 사례 같은 건 어떤가요, 이런 경우에?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전 세계적으로 아마 CCTV 관련해서는 저희 통합관제센터가 매우 잘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현일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2022년도에 이태원 참사 이후 용산구 CCTV 관제센터를 둘러보고 느꼈었는데요. 주차관리 단속 위주로 CCTV가 돼 있어서 현장에서 부구청장한테 주차관리과나 주차관리용과 방범용 호환해서 쓰느냐 했더니 시도도 사실 안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좀 현장이 개탄스럽다 이런 걸 느꼈었습니다. 지금 아까 채현일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경찰하고 소방의 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법적 근거가 꼭 마련돼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호환된다고만 해도 그거는 하드웨어고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할 건가 했을 때 AI 등 신기술 적용 근거가 법안에 필요하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나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서기영** 자료 18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활동의 정의를 확대하고, 안전신고 근거를 마련하며 안전신고 통합포털 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안전문화활동의 정의에 ‘사고 예방 신고 장려’ 또는 ‘안전신고’를 추가하고, 누구든지 안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신고 통합포털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신고 시스템을 갖춘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다만 몇 가지 수정의견을 참고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안전문화활동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활동이므로 국민의 활동인 ‘안전신고’보다는 정부안과 같이 ‘사고 예방 신고 장려’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안전신고의 근거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안전신고는 신고자의 자발적인 행위이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보다는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조항에 함께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시 제도적·기술적 체계 마련 등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률에 명시하기보다는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전문위원 보고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정부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감사합니다, 용혜인 위원님.

다음, 다행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기영** 자료 23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총괄기관 임직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연구개발사업을 실제로 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있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또는 기술보급 등을 하는 연구개발사업 총괄기관이 있는데요. 현행법은 연구개발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만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와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고 연구개발사업 총괄기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연구개발사업 총괄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 업무상 알게 된 자료 또는 정보의 부당 목적 사용을 금지하고 형법상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박성훈 의원안과 김선교 의원안에서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도 비밀의 누설 및 직무상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명시하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사업 총괄기관에 대해서 업무상 자료·정보 누설 및 부당 목적 사용 금지를 신설하고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를 한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의 업무 수행자에 대해서 비밀누설행위에 대한 내용과 직무상 목적 외 사용 금지 내용을 추가하는 부분에 관해서 먼저 비밀누설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현행법이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해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정의 실익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업무 수행자가 알게 된 비밀의 직무상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에 관련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규정을 보면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보안사항의 누설·유출 등 구체적인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목적 외 사용 금지와 같은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금지 사유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연구개발성과의 연계·활용을 통한 후속 연구 개발을 위축시킬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수정안에 반영하지 않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조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정부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 소위원장 조은희 감사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라항 보고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서기영 33페이지입니다.

긴급구조지휘대의 명칭을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변경하려는 내용인데요. 현실에서 실제로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조은희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정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 소위원장 조은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경종 위원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 소위원장 조은희 감사합니다, 모경종 위원님.

자율방재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상정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다음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자연재해대책법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기영 자료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가뭄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과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계 구축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폭염과 한파에 대해서는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유관기관 지원·협조 구축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가뭄대책에 관해서는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유지라든가 빗물모으기시설을 활용한 가뭄 극복대책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 한파와 더불어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으로 대비를 하기 위해서 폭염, 한파의 대책 사유에 준하여서 개정안과 같이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가뭄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가뭄 대비 대책 수립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정부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좌석이 정리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제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비업법 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8)

33.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0)

34.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4)

(11시14분)

○**소위원장 조은희**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4항까지 3건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호영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이호영**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찰청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개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예정인 법안은 경비원이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법률안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하고 경비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감사합니다.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제기된 쟁점 위주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기영 자료 2페이지입니다.

소위 논의 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소위에서 용혜인 위원님께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비경비업무의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기보다는 법률에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비경비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경우에 경비업자에 대한 필요적 허가 취소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3조의 폐지 등 감시·단속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방안을 선행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식 위원님께서는 경비원들이 대부분 서민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경비원들의 고용안정성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께서 필요적 허가 취소는 과도한 부분이 있으므로 임의적 취소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채현일 위원님께서는 경비업자의 교육장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충실한 직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허용되는 비경비업무를 각 경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청은 경비업의 종류와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시행령에 위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경비업 허가 취소의 정도에 관해서 경찰청은 필요적 취소로 규정할 경우에 경비업 허가 전체가 취소되어서 경비원들의 생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고 또 임의적 취소로 완화하더라도 시행령에 영업정지와 취소를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임의적 취소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입니다.

경비업 범위의 경비업무 허용을 법에 규정하자는 사항에 대해서 경찰청은 경비업의 종류와 유형이 다양하기에 법률에 예외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상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감사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이호영 일정 범위의 비경비업무 허용을 법에 규정하자는 사항에 대해서 경찰청은 경비업의 종류와 유형이 다양하기에 법률에 예외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상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경비업무 허용 범위를 최소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 시 경비업 허가 취소 정도입니다. 임의적 취소나, 필요적 취소의 문제입니다.

경비업 허가를 필요적 취소로 규정할 경우 경비업무 전념성을 크게 침해하지 않아도 경비업 허가 전체가 취소되기에 해당 업체에 고용된 경비원들의 생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고 임의적 취소로 완화하여도 위반 시에는 시행령에 영업정지와 취소를 단계별로 규정하고 있어 경비업체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이 가능하기에 임의적 취소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0페이지 경비업 법인 허가 요건 완화입니다.

일반·특수 경비원이 매월 받는 직무교육은 경비지도사가 배치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어 교육장 활용이 매우 낮은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기에 규제 완화 필요성 및 경비업 진입장벽 해소 등을 위해 교육장 요건 폐지에 동의합니다.

참고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어제 경찰하고도 좀 의견을 나누고 했는데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수정의견에 동의한다라는 입장입니다만 어쨌든 이 비경비업무 규정 관련해서는 입법 공백이 발생했을 때 피해가 경비노동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정의견대로 비경비업무를 규정하자라는 것에 동의하는데 다만 비경비업무의 범위가 너무 고무줄처럼 늘어나지는 않는지 그리고 과로방지라고 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시행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국회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경찰에서도, 정부에서도 그런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령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필요적 허가취소 규정 완화와 관련돼서 저는 여전히 우려는 존재합니다만 처벌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이후에 시행령에 경비업무가 허용범위를 벗어날 경우를 포함할 시에는 1차 위반 시부터 영업정지를 하도록 해서 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채현일 위원님.

○**채현일 위원** 교육장 여건 관련해 가지고요, 일단 경찰청 차원에서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평가기준 같은 게 상세하게 되어 있나요, 그런 게?

○**경찰청차장 이호영** 저희들이 일반경비원은 월 2시간, 특수경비원은 월 3시간인데 일반 온라인 교육을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신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만약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혼합하는 어떤 혼합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따로 검토한 적이 있나요? 지금 있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경찰청차장 이호영** 현재 하는 온라인 교육도, 경비지도사가 현장 방문을 통해서 하는 게 오프라인으로 교육하고 있는 거고요. 온라인은 각자 컴퓨터나 사이버를 통해서 하는 온라인,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경비지도사가 배치 현장 방문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러니까 경찰청에서는 이렇게 교육장을 완화하더라도 경비업무, 특히 안전관리나 긴급상황 대처능력이나 전문성 부분에서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경찰청차장 이호영** 충분한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현일 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경찰청차장 이호영** 예.

○**채현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면 용혜인 위원님이 얘기하신 시행령 관련 부분은 경찰청에서 매우 주의해서 반영해 주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에 1차 위반부터 경고가 아니고 영업정지로 가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도 부대의견으로 달면 어떻겠습니까?

○**용혜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상욱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조은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2소위 법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체계화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틀간 계속된 법안 심사로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경찰청 차장을 비롯한 모든 정부 관계자 여러분과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상욱 김종양 모경종 용혜인 이광희 이상식 이해식 정동만 조은희 채현일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서기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경찰청

차장 이호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허철훈